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2(월)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4.

나. 제안자 : 김용근·정종섭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4

라. 상정일자 : 2010. 4. 7(제183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정종섭 의원
- 검토보고 :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소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문제와 보건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.
- 따라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-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예산의 지원 및 위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5조, 안 제6조)
-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□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

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및 보건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용근·정종섭 의원이 2010년 3월 24일 공동 발의한 조례안 임.

□ 주요 검토 내용

- 조례안 제4조(사업의 종류) 제1호의 경작지 지원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여, 영농을 통한 소일거리 창출, 건강관리, 먹거리 해결 및 소액의 판매 소득을 통한 생활안정 기여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제2호의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은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고 급식, 세탁, 목욕봉사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의 자체사업으로서,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단,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“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”로 규정하였고, 「노인복지법」에서는 “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”을 노인공동생활

가정¹⁾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차이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임.

두 가지 사업 모두 국가의 지원이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분야로서 인천시가 앞장서서 노인복지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사료되나, 인천시의 자체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- 안 제3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근거로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조례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.
- 제6조의 위탁관리 규정에서는 조례입법 취지를 볼 때 “시설 관리”에 대한 위탁보다는 “사업의 운영 및 관리”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일부 수정하고,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3항을 신설,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김용근, 이명숙, 박창규, 오홍철, 정종섭 위원
 - 본 조례안에 규정한 ‘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’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‘노인공동생활가정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, 사업의 규모는?
 -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시설로서 관리할 것인지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리할 것인지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분이 필요함
 -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요망

< 답 변 >

1)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제1항 제2호

○ 가정복지국장 장부연

- 노인복지법에 따른 ‘노인공동생활가정’은 5~9명 규모의 시설로서 군·구에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인력을 두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, 본 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‘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’은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료임대나 월세로 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3~5명 규모의 소규모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,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연결하여 세탁, 반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임. 10세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시범 운영 후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임.
-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은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

나. 반대 : 김용근, 이명숙, 박창규, 오홍철, 정종섭 위원

6. 수정안 요지

○ 안 제3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차상위계층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”로,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대상자는 제4조의 사업 종류별로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.

○ 안 제6조의 제목 “(위탁관리)”를 “(위탁)”으로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설”을 “사업”으로, “관리”를 “운영·관리”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탁

관리 기간”을 “위탁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○ 안 제7조를 삭제하고, 안 제8조를 제7조로 한다.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: 1. 수정안 1부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

3.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차상위계층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”로,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대상자는 제4조의 사업 종류별로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 “(위탁관리)”를 “(위탁)”으로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설”을 “사업”으로, “관리”를 “운영·관리”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탁관리기간”을 “위탁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안 제7조를 삭제하고, 안 제8조를 제7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 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의 수급자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의 <u>차상위계층자</u>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6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시설</u>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<u>관리</u>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위탁관리 기간</u>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7조(지원대상자 선정) 제3조의 대상자는 제4조의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(제정안 본문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-----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차상위자</u> ----- <p>② 제1항의 대상자는 제4조의 <u>사업 종류별로</u>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.</p> <p>제6조(위탁) ① ----- ----- <u>사업</u> ----- ----- --- <u>운영·관리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위탁 기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p> <p>제7조(시행규칙) (제정안 제8조와 같음)</p>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같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유희지 등”이라 함은 국·공유지 또는 개인의 소유로서 임대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.
2. “경작지 지원사업”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규모의 경작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”이라 함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의 대상자는 제4조의 사업 종류별로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.

제4조(사업의 종류)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희지 등을 이용한 경작지 지원사업
2.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
3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제5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